

유료방송 채널거래와 사후규제

방송미디어연구실 김태오 연구위원





목 차

- 1.(방송)채널 거래 및 규제의 개관
- 2.(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사후규제의 유형화
- 3.(방송)채널 거래 사후규제 사례
- 4. (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발상의 전환(?)







- 방송채널의 거래 유형
 -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지상파재송신)
 - 유료방송채널(PP채널) 거래
 - 지상파 서울키스테이션과 지역지상파의 채널거래 (···)



- 방송채널과 채널의 개념구분
 - (방송채널) 개개의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가 동일 합 공간에서 시간적 연속하여 편성이 이루어진 결과 물
 - (채널) 방송채널이 채워지는 논리적(물리적) 공간 (capacity)
 - ※ 방송법 금지행위 규제: 방송채널, 채널 개념 구분
 - => 이하, 방송채널 & 채널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방송)채널'이라고 표현
- 방송채널 거래의 주체
 - (방송채널의 공급자, 채널의 수요자) 지상파방송사업 자, PP(종편, 홈쇼핑 포함)
 - (방송채널의 수요자, 채널의 공급자) 유료방송사업자 (SO, 위성, IPTV)

- (방송)채널 거래의 구조
 - (거래 '계약'!) 채널사용계약/채널제공계약 or 방 송프로그램 공급계약, 지상파재송신 계약
 - (거래대상 = only 방송채널?) 방송채널이 사용할 공간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capacity)*도 거 래의 고려요소
 - :: '채널'사용계약, '채널'제공계약
 - => 즉, 방송채널 거래는 채널 거래도 수반
 - (생산요소 거래, 거래대상의 의미) (방송)채널은 유료방송사업(BM)에 있어 중요한 생산요소 (factor of production)
 - (방송채널 거래의 제3자效) 제3자인 유료방송 가입자(시청자)의 시청권

- (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사전규제
 - 일정한 대가로 must offer
 - 대표적으로 상호접속의무와 접속료 규제
 - 규제의 재량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
 - but 우리 현행법제상 (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재
 - cf. 영국 Ofcom, Sky Premium 채널(특히, 스포츠중계채널)에 대한 wholesale must offer condition 부과
 - (방송)채널의 중요성, 특히 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사전규제 수단 작동 가능성 有

- (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사후규제
 - 계약의 자유(사적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되, case by case로 남용행위를 사후적 규제
 - 규제기관은 사후적으로 일정한 숙고 절차를 거쳐 규제여부와 규제방식을 결정
 - 즉, (방송)채널 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부 당'한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적 판단
 - 규제의 재량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

- (방송)채널 거래 사후규제의 쟁점
 - (방송)채널 제공*의 자유와 그 한계
 - ※ 유료방송사업자에 있어서도, 채널에 대한 재산권(Eigentum am Netz), 채널 구성 유용의 자유 有
 - (방송)채널 거래대가 형성의 자유와 한계
 - (방송)채널 거래에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채널의 기능, 중요성, 규범적 가치
 - 사후규제의 고려요소, 사후규제 기준(위 법성 판단기준) 등



2. (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사후규제의 유형화



2. 사후규제의 유형화(분류기준)

- 적용 법제에 따른 사후규제 유형화
 - 방송법에 따른 금지행위 규제
 -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지남용, 부당공동행위, 불 공정거래행위
- 거래주체에 따른 사후규제 유형화
 - 방송채널 공급자(채널 수요자)에 대한 규제(PP, 지상 파)
 - 방송채널 수요자(채널 공급자)에 대한 규제(유료 방송사업자)
- 규제내용에 따른 사후규제 유형화
 - 협상절차(제공 or 공급 거부)
 -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내용(방송채널 제공 대가, 수익배분)

2. 사우규제의 유영와(식용 법제 20 계대구체)

- 방송법상 방송채널 공급자에 대한 사후규제
 - 방송채널 보유 사업자(PP, 지상파)의 방송채널(방송프로그램) 제공 거부·중단·제한
 - ※ (가이드라인) PP의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 방송법상 방송채널 수요자에 대한 사후규제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제공 거부・중단・제한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편성 변경
 -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 ※ (가이드라인) 채널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로 배분 가이드라인(KCTA),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법상 사후규제(공급자, 수요자 공통)

2. 사후규제의 유형화(규제내용)

- (방송)채널 제공 거부에 대한 사후규제
 -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채널 제공을 위한 계약 협상에 임하지 않는 행위
 - (방송)채널 제공 여부,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인정해주기 힘든 현실
 - ※ 중요한 생산요소, 방송의 사회적 가치, 거래상 지위 등
 - (본질) 신의성실에 따른 협상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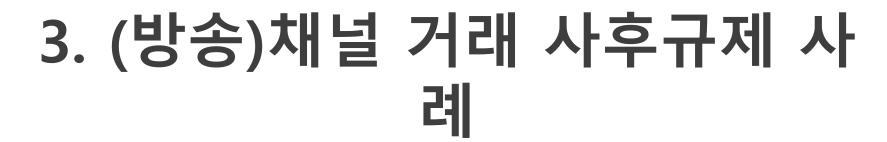
체겨되 게야 내요이 브다히 버겨

- (방송)채널 계약 이행 중단에 대한 사후규제
 - 체결된 계약의 이행 거부(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포함)

2. 사후규제의 유형화(규제내용)

- (방송)채널 제공 계약내용 사후규제
 - (현저한 대가의 요구=사실상 제공의 거부) (방송)채널 제공(이에 대한 접근)과 그 대 가는 동전의 양면(zwei Seiten derselben Medaille)
 - ∴대가가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방송채널 의 제공(접근)가능성 ↓
 - (수익배분의 적정성) 사실상 접근을 하지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수익배분의 조건과 방식의 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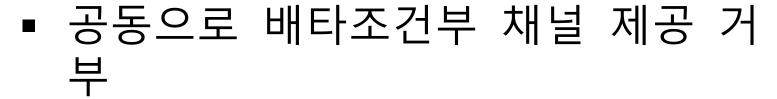




- 불공정한 (방송)채널 거래의 대표 유형
 - (SO→PP)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제공 거부, 정 당한 사유 없는 채널편성 변경, 배타적 조건 부 채널제공* 등
 -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채널 제공
 - (MPP/MSP→SO)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방송채널 제공),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배타조건부 프로그램 제공,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래 제공 거부 등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제공 중단
 - (사실관계) 티브로드 낙동방송이 PP와 프로 그램 공급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중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전일편성 채널을 듀얼편성으로 변경
 - (공정위 판단, 2006.4.17. 의결 제2006-165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로 의율
 - (이유)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의·계약근거 없이 일방적 방송송출시간 단축, 이에 따른 광고수입에 대한 영향, 채널런칭과 유지가 중요한 PP 입장에서 비자발적 동의
 - (평가)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제공 의 중단으로 평가 가능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편성 변경
 - (사실관계) 동일 권역 SO 합병에 따른 홈쇼 핑 채널 번호 변경(8번(S등급)→18(B등급))
 - (공정위 판단, 2007.3.28. 의결 제2007-152호) 시지남용행위(사업활동방해)로 의율
 - (이유)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방송법상 채널편성 변경의 개념) tier의 변경 (저가→고가), 채널번호 변경 등
 - (평가)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편성 을 변경하는 행위로 평가 가능



- (사실관계) MSO가 IPTV와 거래한 PP 온 미디어에 대한 채널량을 공동으로 축소
- (공정위 판단, 2011.8.24. 의결 제2011-153호) 부당공동행위로 의율
- (평가)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 거부, 특히 배타조건부 채널 제공 거 부로 평가 가능

-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 제시
- (행위 유형) 채널편성 대가로 런칭비 요구·수령, 광고 등 다른 명목으로 사실상 런칭비를 요구하거나 우회적으로 수령하는 행위 or SO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가요제,낚시대회,골프대회 등) 비용을 PP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토록 요구하는 행위, 광고시간 구입여부와 연계하여 방송채널 신규편성 또는 기존 방송채널유지 여부 결정 등
-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or 제2호?) 사실상 채널 제공이 거부되는 정도의 현저한 대가 요구 vs. 적절하지 못한 수익배분에 따른 대가의 본질적인 차이??

- 지상파 계열 PP 방송채널 제공 거부
- (사실관계) SBS 계열 PP는, SO(아름방송)의 부당한 채널번호 변경* 및 계약 만료를 근거로 SO에 대하여 무단의 실시간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 ※ 종편 론칭에 따른(방송환경 변화 특약 有) 채널 capa 부족으로 일부 채널변경은 불가피
- (피고 SO의 저작권남용금지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수원지법 2013.12.10. 선고 2012가합8921 판결, 확정)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의 제공을 거부・중단하였다는 항변 인정
- (평가) 저작권·저작인접권 행사 남용은 방송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제공 거부로 인정 가능

-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 (행위유형) 프로그램 사용료 감액 지급
 - (사실관계) 방송수신료 매출이 일부 증가하여 프로그램 사용료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 (방통위 판단, 방통위 2013.2.20. 의결 제2013-11-029호)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 (기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수익배분 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곤란

- OTT 에 대한 실시간 방송채널 제공 거 부
- (사실관계) 티빙의 계약 만료 후 KBS 실시간 방송채널 재송신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 (CJ의 항변) 일방적으로 과도한 재송신 대가 (사용료)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프로그램 제공 거부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 2015.10.5.자 2015카합80633 결정) 금지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고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CJ의 항변 기각
- (평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채널 제공의 거부는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 제1호이 규제대상

- 지상파재송신의 사후규제 가능성(1)
 - (MBC vs. 개별 SO)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 (개별 SO의 주장)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CPS 280원의 거래조건을 강요하며 개별 SO의 재송신을 제한하는 것은 시지남용(+부당한 거 래절, 부당공동행위 주장)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 2016.1.13. 선고 2014가합 567058 판결) 지상파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인정되나, CPS 280원을 재송신료로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CPS 28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정당한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킨 부당 가격 결정행위 또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X
 - (손해배상 기준) ... 난시청 해소 기여, 광고단가 상승 에 따른 광고수익 증가 등 인정 → '직권' CPS 190원
 - (평가)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사후규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법위반의 판단기준과 입증이 문제

- 지상파재송신의 사후규제 가능성(2)
- (지역민방 vs. MSO 및 개별 SO)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MSO 등의 주장) 시지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CPS 280원이 부당하게 높다는 주장, 방송법 제85조의2제 1항 위반 주장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 2016.12.8. 선고 2014가합 525849 판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나 남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 X
- (CPS 280원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 시장가격(통 상이용료), 해외의 재송신료 추이, 협상과정에서 제 시했던 가격 또는 지불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
- (손익상계 주장)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여(유료방송 설비이용 및 송출비용 지출에 따라 방송 수신범위가 넓어져 광고수익 증가)의 개연성은 있으나 이미 이를 고려하여 CPS 280원에 반영
- (평가) CPS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음의 판다 기준 제시





4. (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발상의 전환(?)



4. 발상의 전환(?)

- 사업자별 채널 거래의 중요성 고려
 - (PP, 1차 송출) 유료방송채널 capa가 없으면 비즈니스 존 립근거 상실
 - (지상파, 2차 송출) 유료방송채널 capa가 없어도 사실상 무방, but 실제 시청가능성 축소 우려
 - .: PP의 채널 거래와 지상파의 채널 거래에 대한 사후규제 시 사업자별 채널 거래의 의미 또는 중요성 고려
- 거래 대상인 방송채널의 공적 가치 고려
 - 일반 PP와 지상파 방송채널이 갖는 공적 가치의 차이 고 려
- 방송채널의 법적 지위 고려
 - 방송채널은 개개의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의 묶음 단위 로서 그 자체가 저작인접권의 대상
 - PP채널과 지상파 방송채널의 대가 산정방식이 다르고, 그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차별적인 이유는 부재
 - .. 거래비용 · 사회적 비용 감소와 효율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일적인 대가 산정방식 고려

4. 발상의 전환(?)

- 거래상 지위의 동태적인 우월관계 모니터링
 - 현행 방송법 사후규제 규율과 법해석·적용은 대부분 SO-PP 관계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우월하다는 전제
 - 즉,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만 집중
 - 동태적인 방송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법 금 지행위 규제의 개방성 강조(지상파 vs. 유료방송사업 자)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가치 고려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도 경제적 가치(특히 프리미엄 번호 대역)를 갖는 거래의 객체(BGH Urteil v. 16. Juni 2015, KZR 83/13)
 - 신규채널 런칭비 등 PP에 대하여 채널제공에 연계되는 경제적 이익 요구가 바로 이러한 채널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
 - 방송채널 대가 산정 or 현저성 판단 시 이러한 경제 적 가치와 채널의 경제적 기여 고려 필요 (ISDI) 경제적

4. 발상의 전환(?)

- 가이드라인 제시의 의미
 - 규제기관의 재량↓, 예측가능성↑, but 사후규제에서 사전규제로 접근 경향(?)
- 지상파재송신 대가 사후규제
 - 재송신 대가 사후규제는 현재 그 현저성에 초점이 있으나, 동시에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적정수익 배분(revenue sharing)의 문제(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문제)
- (방송)채널 거래의 사후규제틀과 판단기준 정비
 - 협상단계(제공거부), 이행단계(제공중단, 변경), 내용문제로 체계화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일 적으로 마련할 필요





감사합니다